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84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장근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은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20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과 사이에 2008. 1. 23., 2016. 10. 10. 및 2017. 7. 20.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7,000,000원, 3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C은 2017. 10. 26.경부터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1. 8. 13. 기준으로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합계 66,201,109원이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C은 2017. 8. 25.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207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C이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고향에서 제사를 지낼 자식이 이를 물려받기를 바라는 모친의 의사에 따라 피고가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재산상태 및 C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별지